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시행 2016. 1. 1.] [환경부고시 제2015 - 200호, 2015. 10. 7., 타법개정]

환경부(폐자원관리과), 044 - 201 - 7366

가. 소각대상폐기물 반입수수료

(단위 : 원/톤)

처리시설	폐기물종류		구 분	분류번호	개정(안)
소각시설	폐유		발열량 3,000kcal/kg미만	가-1	113,600
			발열량 3,000kcal/kg이상 ~5,000kcal/kg 미만	가-2	100,000
			발열량 5,000kcal/kg이상 ~7,000kcal/kg 미만	가-3	92,000
			고 상	가-4	150,000
	폐유기용제	할로겐족		가-5	250,000
		비할로겐족	발열량 3,000kcal/kg미만	가-6	113,600
			발열량 3,000kcal/kg이상 ~5,000kcal/kg 미만	가-7	100,000
			발열량 5,000kcal/kg이상 ~7,000kcal/kg 미만	가-8	92,000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합성수지		가-9	230,000

(단위 : 원/톤)

처리시설	폐기물종류		구 분	분류번호	개정(안)
소각시설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합성고무		가-10	230,000
		폐페인트 및 폐락카		가-11	260,900
	PCB함유폐기물		PCB 농도 50% 이상	가-12	28,232,100
			PCB 농도 30% 이상 ~ 50%미만	가-13	18,617,100
			PCB 농도 20% 이상 ~ 30% 미만	가-14	13,640,100
			PCB 농도 10% 이상 ~ 20% 미만	가-15	8,964,100
			PCB 농도 10% 미만	가-16	2,595,100
	폐농약(액상)		발열량 3,000kcal/kg미만	가-17	677,100
			발열량 3,000kcal/kg이상 ~5,000kcal/kg 미만	가-18	643,100
			발열량 5,000kcal/kg이상 ~7,000kcal/kg 미만	가-19	627,100
			발열량 7,000kcal/kg이상	가-20	603,100
	오 니		유기성의 것	가-21	140,000

나. 매립대상 폐기물 반입수수료

(단위 : 원/톤)

처리시설	폐기물 종류	구 분	분류번호	개정(안)
매립시설	광재, 분진, 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폐사, 폐내화물 및 도자기조각, 소각잔재물, 고형화처리물, 폐축매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오니류	직접매립	나-1	65,410~85,400
	폐합성수지,폐합성고무,폐석면,	비중 0.8이상	나-2	68,480~89,400
		0.6이상~0.8미만	나-3	77,210~100,800
		0.6미만	나-4	92,910~121,300
	폐산, 폐알카리	고 상	나-5	65,410~85,400

다. 운반비

폐기물 종류	성 상	운반 차종	구 분	비 중	개정(안)
폐산,폐알카리,폐농약,폐유 폐유기용제,폐페인트 등	액 상	탱크 로리	고정비(원/톤) 변동비(원/톤 · 10km)	1	17,800 237
광재,분진,폐주물사 및 샌드블 라스트폐사,폐내화물 및 도자기조각,소각잔재물, 안정화 또는고형화처리물,폐촉매, 폐 흡착제 및 폐흡수제, 오니류, PCB함유폐기물	고 상	암롤 트럭	고정비(원/톤) 변동비(원/톤 · 10km)	1	20,500 176
폐석면,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페인트및폐락카	고 상	암롤 트럭	고정비(원/톤) 변동비(원/톤 · 10km)	0.8 이상	22,700 196
			고정비(원/톤) 변동비(원/톤 · 10km)	0.60이상 ~0.80미만	29,200 251
			고정비(원/톤) 변동비(원/톤 · 10km)	0.60미만	40,900 352

라. 규제의 재검토

ㅇ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10.7>

《주》

(1) 유해폐기물 함유농도 시험은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의한다.

(2) 기준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별표 3의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말한다.

(3) 발열량은 저위발열량을 말한다.

(4) 변압기, 콘덴서, 드럼통 등 밀폐용기에 들어있는 폐기물로서 처리시설에 투입하기 위하여 절단, 파쇄, 용융 등의 별도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자(이하 공공처리시설 운영자라 한다)가 정하는 처리 수수료를 추가 적용 할 수 있다.

(5) 2종류 이상의 처리대상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위의 반입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적용한다.

(6) 소각처리수수료는 반입폐기물의 성상, 종류 등에 따라 처리방법이 다양하므로 반입폐기물의 성상, 처리시설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공공처리시설운영자가 고시된 수수료범위 내에서 결정、적용하되, 소각대상일반폐기물의 반입수수료는 성상이 유사한 지정폐기물 수수료의 90%를 상회 할 수 없다.

(7) 기타 위의 수수료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폐기물의 수수료는 공공처리시설 운영자가 환경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8) 반입수수료 및 운반비중 고정비는 십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백원단위로 하고, 운반비중 변동비는 원단위로 한다.

(9) 처리위탁 받은 폐기물을 공공처리시설 운영자가 운반하는 경우에는 위에 정한 수수료에 종류별 운반비를 합산하며, 운반비는 운반차종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10)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낙찰가격을 반입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부칙 <제2015 - 200호,2015.10.7.>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